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학 지원〉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62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9.

3. 회부연월일 : 2025.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 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으로 하여금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국가는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 지원 및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u>교육감</u>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u>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 -----.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u>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u>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u>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 및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2)에서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¹⁾.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²⁾ 해당 지역의 통학환경 특성에 따라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³⁾.

개정안은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고 정하도록 하며, 국가는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 지원 및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통학 지원의 주체, 경비, 협력체계 관련 교육감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통학 지원)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근거> 참고 (5페이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도교육청 통학지원 사례> 참고 (6페이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차량,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국고 보조를 통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교육부는 통학 지원 및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개정안 제60조의12제3항의 국고 보조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고유사무는 국고 보조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원’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 1)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근거>

시도 교육청	근거(조례 등)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전	제정 예정
울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추진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경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통학편의 지원 및 차량운영 지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2)

<시·도교육청 통학지원 사례>

시도명	통학지원 유형	세부 지원 기준(거리, 시간 등)
부산	통학차량 운영	○ 농어촌학교,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통학거리 1.5km 또는 도보 30분 초과인 초등학생
광주	통학차량 운영지원 통학비 지원	○ (초등학교) 통학거리 1.5km 초과 또는 통학시간 도보 30분 초과 ○ (중학교) 통학시간 대중교통 30분 초과
울산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초등학교) 통학거리 1.5km를 초과하는 재학생('25년 시범운영)
경기	통학버스 지원	○ (초등학교) 통학거리 1.5km 이상 ○ (중학교)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상
충남	통학차량 지원	○ (초등학교) 통학구역 도보 1.5km 이상 ○ (중학교) 대중교통 30분 이상
전북	통학차량(통학버스, 통학택시) 지원	○ (통학버스) 학구 내 통학거리 1km를 초과하는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 10명 이상인 경우 ○ (통학택시) 학구 내 통학거리 1km를 초과하는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 ※ 단, 9명 이하인 경우도 지역여건상 통학택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버스 지원 가능
전남	통학버스(에듀버스) 지원	○ (초등학교) 통학구역 도보 1.5km 이상 ○ (중학교) 대중교통 30분 이상
	통학택시(에듀택시) 지원	○ (초·중학교) 농어촌 읍면지역에 소재한 공·사립 초·중학교 학생 중 통학거리 2km를 초과
경북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 (초등학교) 농어촌지역 중 통학거리 1.5km 이상, 동지역 중 통학거리 2.5km 이상 ○ (중·고등학교) 농어촌지역 중 대중교통 및 통학버스 지원이 없는 학교를 통학하는 경우
제주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통학버스) - (초등학교) 학교당 1km 이상 원거리 통학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 (중·고등학교) 동지역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7km 이상 또는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 동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 ○ (중·고생 통학교통비 지원) 만 13세 이상이면서,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중·고생

(자료: 교육부)